



“ 탄소배출권 기술협력 ”을 위한

# 업 무 협 약 서



2016. 6.



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 
CLIMATE CHANGE RESEARCH INSTITUTE OF KOREA



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 
KEPCO ENGINEERING & CONSTRUCTION COMPANY, INC

# 탄소배출권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

(재)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한국전력기술(주)는 탄소배출권 기술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양 기관 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협력 및 이행방안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력사항)**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.

1. (재)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
  - 배출권거래제(상쇄제도)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록
  -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
2. 한국전력기술(주)
  -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시, 발전설비 효율개선 또는 신재생 에너지설비 관련 기술 지원
  - CDM사업 수행 경험 공유
3. 양사 공동 협력 사항
  - 신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 교류
  - 국내·외 기후변화 포럼·세미나 개최
  - 기타 양 기관이 합의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

**제3조(협력의 이행)**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, 세부적인 사항은 사안별로 별도 협의하여 추진한다.

**제4조(협약의 원칙)** 본 협약은 상호 「신의성실의 원칙」에 따라 이행한다.

**제5조(비밀유지)** 협약 당사자는 협약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 기밀사항 및 정보를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협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6조(협약의 효력)**

1.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한다.
2.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발효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 단, 양 기관의 서면합의로 2년씩 연장할 수 있다.
3. 양 기관은 본 협정을 중도에 변경 또는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 후, 변경사항을 협의하여 본 협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.

**제7조(기타 사항)** 본 협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본 협정서 2부를 작성,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6월 10일

한국전력기술(주)

(재)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

신재생환경기술 그룹장 김일배

센터장 안병헌



